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4월 8일
- 회부일자 : 2009년 4월 9일

3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·지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·투명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,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,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, 용도지구의 지정 삭제(안 제6조, 제7조)
-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, 구성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위원 임명 조항 신설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-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(안 제19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 -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·지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·투명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,
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,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
 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※ 11개 시도 조례개정완료, 3개(경기, 광주, 전남)시도 추진중임